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01호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3 - 045 호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가. 원서접수 및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정기접수) [5일간]** 6. 5.(월) 09:00~6. 9.(금) 18:00 **(빈자리 접수) [2일간]** **※선착순, 환불불가** 7. 20.(목) 09:00~7. 21.(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7. 29.(토)	8. 30.(수)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 빈자리 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불가

나. 시행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지번	담당부서	
서울지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3	
부산지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01	
대구지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77	
인천지사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6	
광주지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9	
대전지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40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2.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가.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중도 퇴실	시험방법
일반	1교시	1 물류관리론 2 화물운송론 3 국제물류론	09:00까지	09:30 ~ 11:30 (120분)	과목별 40문항	불가	객관식 (5지)
	휴식 시간		11:30 ~ 11:50 (20분)				
	2교시	4 보관하역론 5 물류 관련 법규	11:50까지	12:00 ~ 13:20 (80분)		12:40 이후	
과목 면제	2교시	5 물류 관련 법규	11:50까지	12:00 ~ 12:40 (40분)		불가	

※ 과목면제자는 11:50까지 반드시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시험시간 : 12:00 ~12:40)

※ 일반응시자 기준 12:40분 이후 중도퇴실 가능(과목면제자는 중도퇴실 불가)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제한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4.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과목 이수 후 석사학위 이상 취득만 인정함(학위 취득 후 과목 이수는 미인정)

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3. 4. 17.(월) 09:00 ~ 4. 28.(금)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등기)으로 면제서류 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23. 4.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겉봉투에 「물류관리사 과목면제 신청서류 재중」표기 요망

○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지번	담당부서	
서울지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3	
부산지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01	
대구지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77	
인천지사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6	
광주지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9	
대전지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40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다. 제출서류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1부

○ 학위증(학위기)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학위증(학위기)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을 권장하며(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_우편으로 제출 시 선납봉투(우체국에서 구입가능) 동봉하여 제출)

※ '08년도 제12회 ~ '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27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제출 불필요

(단, 제27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함)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라. 과목면제 서류심사 기간 및 결과 통지

○ 서류심사 기간 : '23. 5. 15.(월) ~ 5. 23.(화)

○ 심사방법 :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 개최 및 수험자별 면제 여부 결정

○ 결과통지 : 수험자에게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개별 통지

○ 결과통지 기간 : '23. 5. 29.(월) ~ 5. 30.(화)

※ 과목면제자 유형 접수는 합격통지 받은 수험자만 가능(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 유형만 접수 가능)

5. 합격자 결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조]

합격자 결정	발표 일시	발표 방법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3. 8. 30.(수) 09:00	·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60일간] · ARS(1666-0100) [4일간,유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정기 접수 : '23. 6. 5.(월) 09:00 ~ 6. 9.(금) 18:00 [5일간]

- 빈자리 접수 : '23. 7. 20.(목) 09:00 ~ 7. 21.(금) 18:00 [2일간]

※ 시험과목 일부면제자도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응시유형 일부과목 면제자로 선택 후 접수)

※ 과목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일반응시자로만 원서접수 가능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가능,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빈자리 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PL)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접수 시 유의사항]

-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PL)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합격증서 발급용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다. 시행기관(일부과목 면제 서류 접수기관과 동일)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고
			지번	담당부서	
서울지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3	
부산지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801	
대구지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77	
인천지사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6	
광주지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9	
대전지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40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5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 환불방법 : 각 자격별 큐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에서만 신청 가능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60%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사후환불	• 응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또는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격리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부 •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응시자가 국방부 소속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각 군 소속 부대의 장의 통제에 따라 휴가 또는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부 • 응시자의 배우자, 응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자녀가 시험 시행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관련 증빙서류와 환불신청서 작성·제출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SMART Q-Finder」 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빈자리 접수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 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큐넷 물류관리사 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지체장애	(1)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2)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3)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배 연장 ※ 단,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는 종목에 한정	①,②,③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지체장애	(4)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1) 또는 (2)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3)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①,②,③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①,②,③호 중 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④,⑤호 중 하나

※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 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7.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23. 7. 29.(토) 17:00 ~ 8. 4.(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발표일 : '23. 8. 30.(수) 09:00

○ 발표 방법

- 물류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PL) **[60일간]**
- ARS(1666-0100) **[4일간, 유료]**
-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나.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교부대상 : 제27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 신청기간 : '23. 8. 30.(수) 09:00 ~

○ 신청기관 : 한국통합물류협회

○ 신청방법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에 접속하여 상단 물류인력DB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클릭(회원가입 불필요 및 무료발급)

※ 단, 배송비용(우편료) 3,000원 별도 납부(우편배송 신청 시)

○ 교부장소 : 합격자 발표 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담당자(☎ 070-7090-6642) 문의

9. 수험자 유의사항

【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⑩ 모바일 신분증(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단, 모바일 신분증 인정범위를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할 수 없습니다.(단, 2교시는 일반응시자 기준으로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0점)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해당교시별 퇴실가능시간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 ·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KF94이상 권장)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시험장에서 실시 및 안내하는 발열체크,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장애인 등)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유형별 응시 편의 제공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6. 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자리 원서접수는 선착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17.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객관식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 형별란에 표시된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